

제 1 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1장 위원회 구성
- 제2장 심의·의결 절차
-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제 1 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2010년 2월 2일 전일인 2월 1일부터 선거일후 30일(2010년 7월 2일)까지 활동했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 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9.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 구 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자에 포함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언론학회, 신문협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 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권자인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장	양 삼 승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위원장	박 기 동	변 호 사	언론중재위원회	
위 원	박 문 웅	공선협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시민단체)	
	원 병 설	배재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 병 철	전 세계일보 주필	한나라당	
	한 국 연	전 CBS 상무이사	언론중재위원회	
	배 정 근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신문협회(언론인단체)	
	김 동 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이 용 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주당	

3. 기 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 2 장

심의 · 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전문 모니터요원과 실무팀은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전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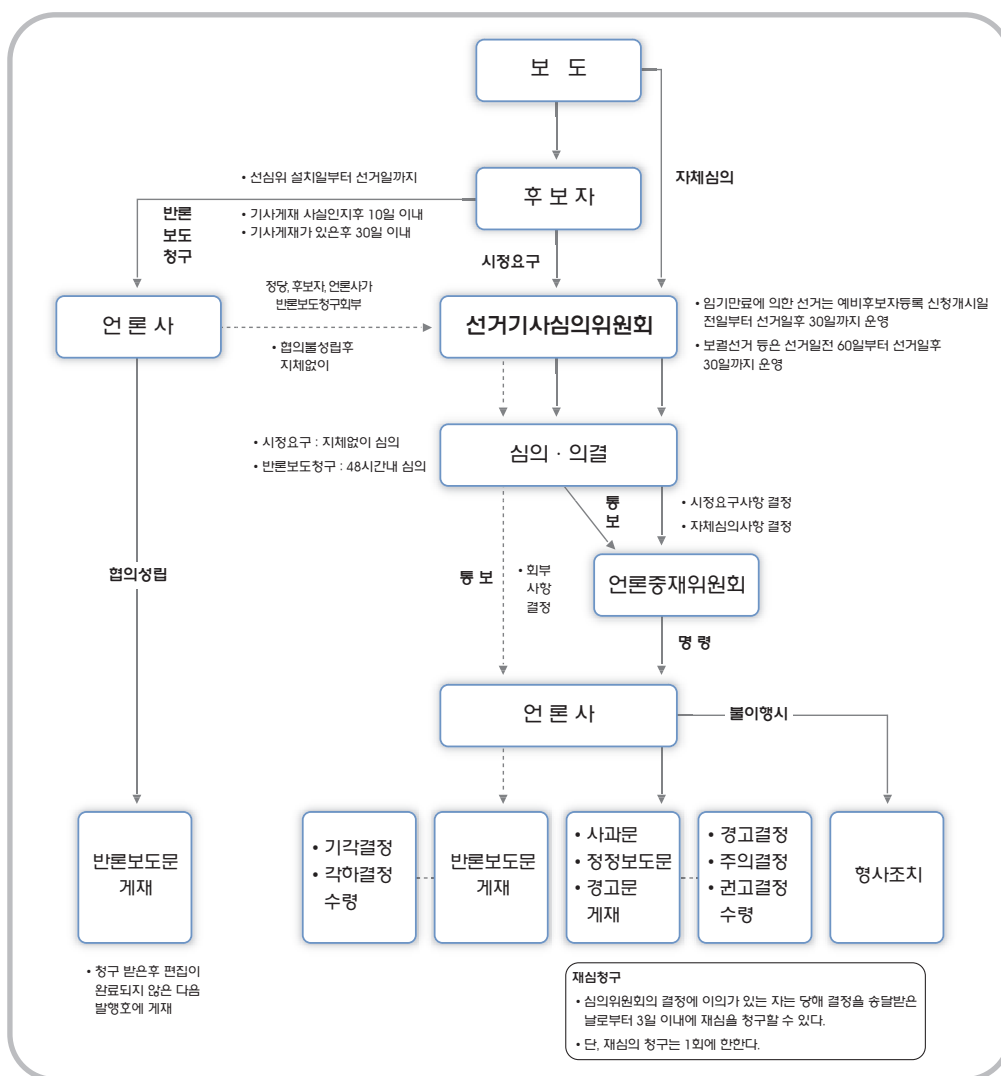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

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 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나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심의 · 의결 흐름도



※ 처벌조항 : 결정사항 불이행 시, 공직선거법(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공직선거법 개정(위원회 관련)

2009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2010. 1. 25.시행)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 중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변경이다. 그동안 재·보궐 선거시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재·보궐 선거시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둘째,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후 국회 교섭정당이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보도록 했다.

셋째,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기간이 변경되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가능했던 반론보도청구가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2.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전면 개정(2010. 1. 26.)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위원 추천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심의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요구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정요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각하 또는 기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관련 서식을 신설했다.

3.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개정 「공직선거법」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 보도에 관한 조항인 제10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심의기준에 포함했다.

즉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신설하여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보도할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서열화하여서는 안되도록 했으며,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결과 보도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도록 했다.

